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 선고 2018가단2118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**원고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형호

**피고**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

담당변호사 주덕

**변론 종결**2018. 11. 27.

**판결 선고**2019. 1. 15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,623,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18.부터 2019. 1. 1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 7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2,31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

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 싼타페 차량(이하 '원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피고는 D SM5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E은 2017. 9. 27. 12: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교차로(T자형)를 광덕 방면에서 청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주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,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다. 원고는 2017. 10. 17.까지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원고 차량 가액 35,200,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2,881,000원을 뺀 32,319,000원을 자기차량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-1, 2, 2, 4, 5, 6, 을 1,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#### 가. 쌍방 차량의 과실 비율

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한편,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서행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상당 부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다.

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,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%, 피고 차량 70%로 봄이 타당하다.

#### 나. 인용금액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,623,300원(= 32,319,000원 × 70%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. 10. 1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1. 15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결론**

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

**판사김도현**